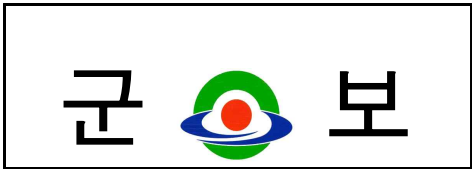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98호 2024. 1.1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2024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4-129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2024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예 천 군 수

I 개 요

1.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대상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절차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행정지원실로 제출

II 명예퇴직신청자 선정 및 제한

1.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가. 제3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심사·결정.

2. 명예퇴직 대상자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사.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아.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III 퇴직대상자의 통지

☐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IV 퇴직수당 지급

- ☐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V 기타사항

1.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비위조사 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의 자필『명예퇴직원』을 반드시 확인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34089호)을 참조하거나 행정지원실 행정팀(650-6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신청인	① 소속	③ 공무원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생년월일	
	⑦ 주소	□□□□□		
기재란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선고형:)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예천군수 귀하

-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소 속 기 관	→	지급결정 및 통보 지 방 자 치 단 체	→	신청인 통지 소 속 기 관	→	지 급 지 방 자 치 단 체
---------------	---	----------------	---	--------------------------	---	-------------------	---	--------------------

작성 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급·계급 :

4. 성 명 :

○ 명예퇴직 사유 :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용됩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해당여부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인지 여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는 자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경우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지방공무원법제2조및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그 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조사 작성 및 확인자			
2024년 월 일			
직급		성 명	①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장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비고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left[60+\frac{\text{정년잔여월수}-60}{2}\right]$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 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